

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98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년 8월 14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

## 2. 주요내용

- 제3조의2 본문 중 기금의 존속기한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개정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신설규제 없음
- (3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협의완료
- (4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5) 여성정책담당관(성별영향분석평가): 제외법령
- (6) 갈등조정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 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 
실·본국·국 협의 사항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17. 6. 22. ~ 7. 12.) 결과: 별도 붙임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붙임(개정인 경우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본문 중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정       안
<p>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17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           ----- <u>2022년 12월 31일</u>-----            ----- .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----- .</p>

##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 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비용을 추계하기 어려움

#### 3. 미첨부 사유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의2 본문 중 기금의 존속기한 “2017년 12월 31일”을 “2022년 12월 31일”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발생하지 않음

#### 4. 작성자

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이광훈(2133-7325)